

양사 모두 수용이 불가하다기에 이럴수도 저럴수도 없는 상황에 이르렀다.

임차업체에서는 이미 제품생산을 시작하였고 물류수송방안은 없기에 하는 수 없이 관리권을 공매하여 줄 것을 요청하였다.

공매는 여러번 경험이 있어 일반 부동산과 같이 진행하면 된다는 생각이었지만 이번 건은 고액이고 생소한 건이라 자칫 잘못하면 어떻하나 겁도 났다.

그리하여 공매가능 여부에 대해 항만청(이전등록필 여부), 고문변호사(하자 여부), 법무사(절차), 등기소(등기작성요령) 등 여러곳에 알아보니 공매가 가능하다는 답을 얻었다. 이어 감정사와 함께 관리권을 평가하러 현지를 방문해 보니 문제가 생겼다. 싸이로를 가동하는 기타 부대시설(전기설비 등)이나 건축물(하역용 철골조 등)이 있는 것이었다.

문제는 관리권만 공매할시, 동 시설물 일부가 체납업체 소유이므로 낙찰자가 모든 시설물을 사용할 수가 없는 것이다.

부라부라 건축물 등 26건을 추가 압류하여 감정하였고 그 결과 관리권이 9억, 부대설비가 7억원으로 평가되어 공매최저가가 16억원이 되자 너무 높아 임차업체로서는 매입재력 등을 고려하여 응찰기미를 보이지 않았다.

임차업체에서는 공장은 가동되어 제 품은 계속 생산되고 시설물은 사용하여야 겠기에 자구책으로 시설물을 사용할 수 있도록 사용동의(압류권자로서 사용허가)를 요구했다.

이에 동의조건으로 반드시 공매에 응할 것과 이를 보증하는 조건으로 체납액에 상당하는 현금보증(7억원)을 제시하자 수락하였고 임차업체명의로 은행에 타금을 ○○은행에 질권설정(법인인감증명과 양도성예금통장)하고 항만청에 사용동의를 해 주었다.

공매는 계속 유찰되어 최저가 50%에 달하는 시점인 99년 10월에 임차업체가 최종(7회차) 낙찰에 응하므로써 종결되었고 설정한 예금질권도 해지하였다.

이제 마지막으로 배분·이전 등 청산 절차를 밟아야 했다. 가압류권자인 성업공사는 배분에 참여치 못하므로 우리시만 배분하여 체납처분비를 포함, 7억원을 세입처리하였고 배분잔금은 체납법인에게 돌려주어야 되는데 수령자가 없어 공탁하고자 했다.

그러나 배분잔금이 있을 것으로 예상한 채권자 3인이 우리시를 제3채무자로 하여 확정판결문(가압류, 압류 및 추심명령)을 각각 제시하므로 인해 채권이 경합되었다.